

채용시험의 가산점

구 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 고 (증빙)
법정 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 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 가점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3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한다)	3%	경력증명서
	10. 근무예정지역(시·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근무예정지역(시·군) 거주자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가점의 총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100점 만점일 경우,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 특별가점, 경력가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되며 각 구분 안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함